

예 산 총 칙

제1조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 예산총액	일시차입 한도액
계	630,978,347	26,745,129
일반회계	520,674,689	15,620,241
특별회계	110,303,658	11,124,888
기타특별회계	10,529,593	315,888
• 주택사업특별회계	768,172	23,045
• 교통사업특별회계	5,748,992	172,470
•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	3,689,029	110,671
• 기반시설특별회계	323,400	9,702
공기업특별회계	99,774,065	10,809,000
• 상수도사업특별회계	31,615,013	3,000,000
• 하수도사업특별회계	46,159,052	1,809,000
•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	22,000,000	6,000,000

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예산” 과 같다.

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“해당없음”

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“계속비사업조서” 와 같다.

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“명시이월사업조서” 와 같다.

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,252,769천원으로 한다.

제7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7,4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